

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-|
| 의안 번호 | 관련 2557 |
|----------|---------|

제안년월일 : 2021년 8월 31일
제안자 : 교통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동 개정조례안이 공포될 경우 현행 주차장관리계정 세출예산과 개정안에서 규정한 사업용도가 불일치함에 따라 기존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과규칙에 적용례를 두어 논란의 여지를 방지하고 하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현행 조례를 반영하여 “주차장 특별회계”를 “주차장관리계정”으로 용어를 정리함(안 제7조제2항제6호)
-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칙의 적용례를 둠(부칙 제1조, 제2조)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2항제6호 중 “주차장 특별회계”를 “주차장관리계정”한다.

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주차장관리계정 사용용도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(의원발의안) | 수 정 안(전문위원실안) |
|--|--|---|
| <p>제7조(주차장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) ① (생략)</p> <p>② 주차장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.</p> <p>1. 공영주차장의 설치·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 <p>2. · 3. (생략)</p> <p>4. 주차 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업 등</p> <p>5. (생략)</p> | <p>제7조(주차장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관리계정----- 용도로 사용한다.</p> <p>1. 주차환경개선사업 :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,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·관리, 주차장 정보구축,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</p> <p>2. 주차질서유지사업 :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,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 장비구입, 단속 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</p> <p>3. · 4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| <p>제7조(주차장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3. · 4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(개정안과 같음)</p> <p>5. (개정안과 같음)</p>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<p><신 설></p> | <p>6. <u>주차장 특별회계</u>의 조성·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</p> | <p>6. <u>주차장관리계정</u>----- -----</p> |
|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<u>제1조(시행일)</u>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<u>제2조(주차장관리계정 사용 용도에 관한 적용례)</u> <u>제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회계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 터 적용한다.</u></p> |

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주차장관리계정의 세출”을 “제1항에 따른 주차장관리계정”으로, “지출로 한다”를 “용도로 사용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주차환경개선사업 :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,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·관리, 주차장 정보구축,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
2. 주차질서유지사업 :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,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 장비구입,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
6. 주차장관리계정의 조성·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주차장관리계정 사용용도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7조(주차장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) ① (생 략)</p> <p>② <u>주차장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.</u></p> <p>1. <u>공영주차장의 설치·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</u></p> <p><신 설></p> <p>2.·3. (생 략)</p> <p>4. <u>주차 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업 등</u></p> <p>5.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 | <p>제7조(주차장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주차장관리계정----- 용도로 사용한다.</u></p> <p>1. <u>주차환경개선사업 :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,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·관리, 주차장 정보구축,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</u></p> <p>2. <u>주차질서유지사업 :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,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 장비구입,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</u></p> <p>3.·4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주차장관리계정의 조성·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</u></p> |